

학생회칙

제정	1988.09.01	1차 개정	1995.03.01
2차 개정	1989.03.01	3차 개정	2009.03.01
4차 개정	2012.02.10	5차 개정	2014.02.01
6차 개정	2015.01.01	7차 개정	2017.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송정보대학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민족과 인류문화 창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7.3.1.>

제4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기능이 정지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예술, 취미, 체육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활동

제2장 기능, 구성, 직능

제1절 학생회

제9조(구성) 본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각 부서장 각 1인씩을 둔다.

제10조(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제반사업의 기획, 사무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2. 삭제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홍보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각 대학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홍보문제를 담당한다.
5. 삭제
6. 삭제
7. 복지부 : 회원의 복지 및 간부수련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8. 삭제
9.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일체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직무 및 선출) ①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학생회 정·부회장의 입후보자격 및 부서장의 자격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前)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 적용 안함)로서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학생회 정·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각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기타 상세한 것은 학생회 부서장 승인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7.3.1.>
2. 사업계획의 수행
3.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4.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6.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13조(구성) 대의원회는 전학과 각 반대표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총학생회의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개정 2017.3.1.>
5.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출석요구 및 불신임 결의 (다만,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신임 결의를 받은 해당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15조(의장) 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원 1/3이상 또는 학생회임원 1/2이상 및 학교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7조(예산집행) 삭제 <2017.3.1.>

제3장 재 정

제18조(회비징수 및 관리) ①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회비는 본회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④회비는 학교당국에 의뢰하여 징수하고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19조(예산편성 및 집행) <개정 2017.3.1.> ①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③예산은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1. 학생회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 대의원회의 예산집행은 학생회의 승인없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3. 예산 승인후 세부적인 집행은 학생지도위원장에게 결제후 시행한다.

<개정 2017.3.1.>

4. 단일사업 예산(추정가격)이 일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3.1.>

④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경예산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30일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위원회

- 제21조(목적) 삭제 <2017.3.1.>
- 제22조(구성) 삭제 <2017.3.1.>
- 제23조(기능) 삭제 <2017.3.1.>
- 제24조(임무)삭제 <2017.3.1.>
- 제25조(소집) 삭제 <2017.3.1.>
- 제26조(의결) 삭제 <2017.3.1.>
- 제27조(집행) 삭제 <2017.3.1.>
- 제28조(세칙개정) 삭제 <2017.3.1.>

제5장 보 칙

- 제29조(회칙개정) ①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생회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3.1.>
② 삭제 <2017.3.1.>
- 제30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